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 회 사 무 국

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
발 의 자	김근한 의원

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근한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5. . .

발 의 자:김근한

찬 성 자: 김낙관·김민성·김재우·양진오

이지연·장미경·정지원 의원(7명)

1. 제안이유

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유능한 지역 법조인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등 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, 겸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미시의회 법률 자문체계의 독립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 근거 마련(안 제3조제2항)
- 고문변호사의 연임이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
-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겸임 제한 규정 신설(안 제3조제4항)
 -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고문변호사의 겸임 금지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없음

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의회 이"를 ""의회""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의장 이"를 ""의장"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하되"를 "하되, 한 차례만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고문변호사는 구미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각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제3조"를 "제2조 제1항"으로 한다.

제7조 전단 중 "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"을 "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잔여 임기는

종전 규정에 따라 유효하며, 개정된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	제1조(목적)
회(이하 <u>의회 이</u> 라 한다)에서	<u>"의회"</u>
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	
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	
변호사를 두고, 그 운영에 필요	
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2조(직무) ① (생 략)	제2조(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<u>각호</u> 의	② <u>각호</u>
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	
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	
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	
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	
는 아니된다.	
제3조(위촉) ①구미시의회의장(이	제3조(위촉) ①
하 <u>의장 이</u> 라 한다)은 개업중인	<u>"의장"이</u>
변호사 가운데서 2인 이내의 고	
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	
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	2
로 <u>하되</u> 연임할 수 있다.	<u>하되, 한 차례만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고문변호사는 구미시 고문변
	호사를 겸할 수 없다.

제4조(해촉)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제2조 <u>각항</u>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3. (생략)

제5조(사건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【별지 제 3호 서식】에 의한 사건실적부 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(소송비용) 고문변호사가 구 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 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 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 산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. 다 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 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 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관 례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소송비 용을 지급할 수 있다

제4조(해촉)		
<u>각호</u>		
1. (현행과 같음)		
2 <u>제2항</u>		
3.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사건실적부 비치)		
제2조 제1항		
제7조(소송비용)		
<u>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</u>		
<u>산입에 관한 규칙</u>		